

第十八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第三十五號 國會事務處

檀紀四二八七年三月十五日(月)上午十時

議事日程(第三十五次會議)

- 一 第三十四次會議錄通過
- 二 報告事項
- 三 憲法改正案撤回에 關한承認의件
- 四 檀紀四二八二、三年度歲入歲出決算
- 五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 特別市指定에 關한法律案
- 六 市郡의 設置와 管轄區域變更에 關한件 第一讀會

討議된案件

- 一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緊急勸諭案
- 二 憲法改正案撤回의件
- 三 檀紀四二八二、三年度總決算承認의件
- 四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 特別市指定에 關한法律案
- 五 忠武市昇格에 關한法律案上程要求의件

(上午十時三十五分開議)

○副議長(曹奉岩) 座席整頓하주세요 第三十五次會議을 始作합니다 第三十四次會議錄을 朗讀합니다

(議事課長 第三十四次會議錄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漏落된거나 錯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다음은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徐商俊) 三月十二日자로 裴恩希議員外 二十九人으로부터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을 提案했습니다 本件은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委員會에 回附합니다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 一 主文
- 別紙와 如함
- 二 理由
- 口頭說明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에 依하여 首題法案提案함 檀紀四二八七年三月十二日 裴案者 裴恩希外二十九人

三月十三日자로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金正實議員과 內務委員會委員長 趙瓊奎議員連名으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 特別市指定에 關한法律案에 對한審查報告가 있습니다 本件은 오늘 議事日程에 上程된것입니다

檀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法制司法委員長 金正實
內務委員長 趙瓊奎

民議院議長 申翼熙 貴下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및 特別市指定에 關한法律案審查報告에 關한件

標題의件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修正案을 附하여 本會議에 附議기로 議決하였습니 茲에 報告합니다

三月十三日자로 財政經濟委員會委員長 朴晚元議員으로부터 檀紀四二八七年度一般會計 및 各特別會計歲入歲出總豫算案豫備審查報告가 있습니다 本件은 豫算決算委員會로 回附합니다

檀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財政經濟委員會 委員長 朴晚元

民議院議長 申翼熙 貴下

檀紀四二八七年度一般會計 및 各特別會計歲入歲出總豫算案豫備審查報告의件 (對檀紀四二八七年二月十六日字回附)

題記의件에 關하여 本委員會에서 豫備審查한結果 左記와 如히 議決하였읍니 茲에 審查報告합니다

記

- 一 國債金特別會計
歲入은 原案 歲出은 別紙와 如히 修正通過
歲出豫算中第一章 第三項 第十二目第一節 補助金中一三、六二七、六七一圓은 對政府增額同意를 要請키로 議決함
- 二 專賣事業特別會計
政府提出原案通過
政府提出原案通過
- 三 財務部所管

三月十三日자로 社會保健委員會委員長 韓國源議
員으로부터 禮紀四二八六年度社會部保健部所管歲
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가 있습니다 豫
算決算委員會에 回附합니다

禮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社會保健委員會
委員長 韓 國 源
民議院議長 申翼熙 貴下

禮紀四二八六年度社會部、保健部所管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의件
首題의件 三月九日附政府로부터 提出된豫算案에
關하여本委員會에서 審査한結果左記와如히 決議
되었습니 茲以報告합니다

記

一 社會部所管

禮紀四二八六年度社會部所管一般會計및戰亂收拾
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政府案대로無修正通過됨

一 保健部所管

禮紀四二八六年度保健部所管一般會計및戰亂收拾
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政府案대로無修正通過됨

三月十三日자로 交通通信委員會委員長 慎錫瓚議
員으로부터 禮紀四二八六年度通信事業特別會計및
國民生命保險및 郵便年金特別會計 第二回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가 있습니다 本件은
豫算決算委員會에 回附합니다

禮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交通通信委員會
委員長 慎 錫 瓚

民議院議長 申翼熙 貴下
禮紀四二八六年度通信事業特別會計및 國民生
命保險及郵便年金特別會計第二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
標題豫算案 本委員會에서 豫備審査한結果政府原案
대로 無修正通過되었습니 茲에報告합니다

禮紀四二八六年度 交通事業特別會計第二回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報告가 있습니다 豫算
決算委員會에 回附합니다

禮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交通通信委員會
委員長 慎 錫 瓚

民議院議長 申翼熙 貴下

禮紀四二八六年度 交通事業特別會計第二回歲
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의件
標題豫算案本委員會에서 豫備審査한結果政府原案
대로 無修正通過되었습니 茲에報告합니다

太完善議員外 十八으로부터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緊急動議가 있습니다

緊急動議

一 主 文

商工部長官을 招請하여 韓美重石協定延長問題
에關한諸般質問을한것을 決議함

一 理 由

口頭說明

禮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提案者 太完善外十八

徐相繼議員外 四十六人으로부터 緊急決議案이提
出되었습니다

緊急決議案

一 主 文

統營邑을忠武市로 昇格하는法律案을 三月十七
日까지 本會議에上程케한것을 決議함

一 理 由

前記統營邑을忠武市로하는 法律案은 內務委員
會에서 禮紀四二八六年度十一月十八日에 審議完
了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하였습니 不
拘하고 同委員會에서 干今 審議하여 本會議
에 回附하지아니하며 會期가迫頭했으므로 此
를 早速審議回附하기를 要望함

禮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右 提案者 徐相繼外四十六人

三月十三日자로 大統領李承晚閣下에서 國務總理
와 法務長官의 連署를 얻어가지고 刑事訴訟法
案에對한 異議를提出해왔습니다

禮紀四二八七年三月十三日

大統領 李 承 晚

國務委員國務總理 白 斗 鎮

國務委員法務長官 徐 相 儻

民議院議長 申翼熙 貴下

刑事訴訟法異議에關한件

貴院에서 議決하여 政府에移送한 刑事訴訟法案

에關하여는 別紙와같은理由로 異議가있아와 國務會議의議決을거쳐 憲法第四十條第二項의 規定에依하여 貴院에還付하오니 再議하여주심을務望 하나이다

○副議長(曹奉岩) 報告事項에서 들으신바와같이 太完善議員 外에 영문으로부터 商工部長官을出席케해서 車石協定에 關係되는것을質問하자는 緊急動議案이 提案되었어요 提案者의 說明을 들것읍니다 太完善議員을 紹介합니다

(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緊急動議案) 太完善議員 미리 諒解를 좀 求할것은 假令 商工部長官을 招請하자고 그랬는대 國務總理를 引것을 빠르렸읍니다 그래서 이차리에서 그것

을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車石協定에對한 問題는 延期했읍니다 라는 것은機會에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유·엔」軍에對한 電力料金問題를같이 質問했으면 좋으리라 그러서 이것을添加할것에

諒解를 求하는바입니다 現下 우리政府나 國會나 國民이 모두가 産業再建이라는 重要大課題에集中해서 橫斷을하고 努力을하고 盡力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事實에있어서는 이러한 國家의 重大한 課題 또 업으로는 널리 再建을하며 면서도 事實에있어서는 이와 進行되는 重大한 事實이 자주 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 지난 一九

五二年 三月三十一일에 韓美間에 協定된 車石의 賠償에對한 或은 技術援助에對한 協定이 一萬五千톤의 生産이 達成될때에는 이協定을 다시금 協議해서 延長 或은 廢止한다는것이 規定되어있읍니다 大概 今年四月이나 五月에 豫

期했던 期間보다도 短時日內에 一萬五千톤의 數字에達成될때에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數日前에 新聞紙上으로 或은 其他 報道에依해서 美國側으로부터 이韓國에서 車石을 購買할것을

다시말씀하면 協定の 延長을 하지않겠다는 通告가왔는것입니다 이 얘기는 가장 單純한것같지만 우리나라의 産業再建과 앞으로의 우리의

발전사리에 가장 重要한 關鍵이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等閑視 할수가없는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車石生

産은 一九五三年度 實績을 본것같은데 自由陣營國家에서 第一位로生産한 美國의 八千五百톤에對해서 우리나라에서 第二位로 七千四百餘톤

을 生産하고 그것은 全部 美國다시말하면 自由陣營의 戰略物資로서 一圓의으로 供給을 해

왔는것입니다 이 數字는 우리나라의 一九五三年度의 總輸出額 四千五百萬弗에對해서 이 車石만이 占하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七·七 퍼센트 라는 多大數에 「퍼센테이지」를 占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와서는 모든 車石生産機關이 年間 一萬五千톤 生産을 目標로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微弱的 財源을 가지고 外貨를 獲得하기爲해서 目標은 六千萬弗을 目標로 해서 技術의 改善等 全力을다해서 이 車石生産에 總集中하고있는 이마당에

對策에對해서 質問하자는것이 本議員의 提案인것입니다 둘째로는 恒常 基幹産業이라고해서 商工部當局이나 政府當局에서 「에프」政策이냐 무슨政策 이니해서 우리 國民앞에 實施을하고 있는것입니다

그중 가장 重要한 電力에對한問題는 恒常 우리가 이것을 念慮하면서 專斷에있어서 亦是 좋은門으로 자주 陷入하고있읍니다 이러한 現實을 打開하지못하고 앞으로

五個年 三個年 開發計劃이니 일으로써 達成하기 大端히 어렵다고 생각되는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重要한 問題가 料金の調整이라는 問題도

있겠지만 四代長官을 通해서 아직 政府가 解決하지못하고있는 「유·엔」軍의 電力料金 未收 金을 時急히 終結시키나할것같은 電氣事業

은 發展할수없는 現實에있다는것은 우리國會에서 提起하였음에도不拘하고 아직껏 이 問題가 解決의 曙光을 보지못하고있는 이마당에

亦是 基幹産業에對한 重要한問題이기때문에 車石協定問題와 같이 아울러서 國務總理와 商工部長官에게 質問하고자하는것이 제 緊急動議의內容입니다 아무로록 이 重要性에 비추어서 또 時間性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贊同하셔서 이勸

議案을 採擇해주시기를바라는바입니다 ○副議長(曹奉岩) 그러면 이것은 只今 提案者의 說明을 다 들었읍니다 라는 商工長官은 要求 하나이다 國務總理와 商工部長官에게 出席을 要求 하고싶고 또 한가지는 車石問題뿐만 아니라 電力問題에對한것도 兼해서 이야기 하겠다는것입

다다 다른 意見없습니까

(「언제 부르자는 것입니까」하는이 있

음)

(「可及的 早速히」하는이 있음)

時日을 여기서 定하지 않았습니까 될수있는대로 빨리하라고하는 것입니까 다른 意見없어요 그러면 表決합니까

(舉手表決)

在席員數 九十人 可에 五十七票 否에 한票도 없이 動議가 可決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早速한 時日이라고 했으니 될수있는대로 빨리 이것이 되도록 努力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事項이 없으면 議事日程으로 들어가겠어요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改正案 撤回에關한 承認의件 이것은 여러분이 記憶하는바와같이 國務總理出席을 要求해서 總理의 說明을듣고 이問題를 可否 決定하자는 決議가 있었기때문에 오늘까지 延期되었는것입니다 오늘은 國務總理가 出席하였기때문에 그 說明을 들기로 하였습니까

(憲法改正案撤回의件)

○國務總理(白斗鎮)憲法改正案을 撤回하고 새로운 國會에서 다시 提案해가치고 討議하겠다는 書面을 接受했는 날은 :그날 出席해서 理由를 說明하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제쳤다고 하나 제가事故가 있어서 못나왔는것입니다 그다음에 또와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울려고하니카도 事務處에서 電話가 오기를 오지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요전 土曜日에는 事故가있고해서 大端히 理由說明이 遷延되

어서 未安하게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撤回理由

書에있는바와 마찬가지로 次朝國會에 이것을 提案하겠다는것은 別다른 理由가 아니라 只今

부터 제가 말하는 몇가지로 要約할수있다고 하겠습니까 첫째 이 改憲案을 提出하였드니

國會에서 여러분 말씀이 아닌밤중에 흥두께

내밀듯이 어떻게 내놓으면 討議도할수없고 困難하지않는나하는 이야기가 大端히 支配의이었

습니다 그 點은 모든法案이라든지 或은 豫算案과 달려서 政府로서도 大端히 急作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協議를 하고 좀더 좋은 案을 만들수없었다는것을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래서 二十三日에 公告를해

가지고 二月二十三日以後 그 案件을 討議하기

前에 國會主權로 公聽會도 있었고 그것은 討

議하는 過程에있어서 우리가 感得한것이 몇가

지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政府에서 그案을 낼

때에 그案을 討議하는 過程에있어서의 몇가지

點의 하나인데 첫째 모든 細密한條項 細密한

條項에도 勿論 貴重한 條項도있고 덜 貴重한

條項도 있었는데 이번國會에서는 時間關係로

이것은 討議할수없고 단지 憲法の 經濟條項各

條에있어서의 몇가지를 法律에 移讓한다고 그

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法律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을 調節하는것은 새로운 國會에서 하게

되었단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생각했습니까마는

大端히 좀 어려운問題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는 다 이것이 合意가 잘 되어서 될것이니까

관찰을알았는데 그間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理由가 있던 말이에요 요다음의 國會

에다가 法律을 만들 義務를賦課해놓고 나간다

고하면서 그內容도없이 내놓는다 하는것이 理

國會로서 어렵겠다는 說明을 들을적에 저도

同意한것입니다 그다음의 問題는 또 무엇이냐

하라는 이것은 各派의 派員을하고도 協議를했음

니다마는 天然資源의處分이라는 文句가 있는데

그處分이라는文句는 政府로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했는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處分

이라는 文句의 法律的 內容如何는 莫論하고

그주는 印象이 大端히 日後에 여러분이 目的

을 向해서 가시는대 大端히 支障이 되었다는

애기를 저희가 와서 길게 얘기한분이 :여기에

도 出席해계십니까마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

해보니 여러분을 도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이

것은 꼭 通過해주시야 되겠다고하고 이것을하

셔야 되겠다고 차우 說得을하고 說明을해가지

고 오히려 苦痛스러운 立場에 놓는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는것입니다 그러면 果然

어디까지 前進되었느냐 하면 이處分이라는 語

句를 고쳐가지고 統括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것이 三十日間을 公告했다가 또 새로 三十日

을 公告한다고 할것같은면 그것은 여간 支障

이 생기지않어요 그래서 이것 저것을 생각한

結果 何如間 이問題는 全部 國民이 다 알게된

것이요 또 요다음 國會에 이것이 나감것이냐

간 이번에 우리들이 討議한것이 조금도 國家

의 일해가는데에 虛失된것이 없다 그렇게 생

각해가지고 今番에 이것을 여러가지모로 봐가

지고 時間的으로 支配하기가 大端히 어려운問

내가지고서 討論하는 데에 요번에는 좀 모이겠
어서 事前에 좀 애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智識도 나오고 좋은 생각도 나
올 것이니깐 하는 그런 생각의 政府의 뜻입니
다 大體로 이러한 精神으로다가 改憲案을 撤回
하게 되겠습니다. 잘 諒解하시어서 國會에서는
法에 依해서 處理해 주실 것을 政府에서는 確信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限只 하나 더 追加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부문의 改憲案을 通過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의 말이 있었어요. 通過
는 시켜 주어야 되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 말씀을 하나 하면 改
憲案을 長久에 부쳐 가지고 서로 諒解가 成立될
時間的 餘裕가 없기 때문에 萬若 否決이 될 것 같
으면는 그것이 或은 國際的으로라든지 좀 좋
지 못하다는 얘기를 아주 率直히 誠心誠意로
얘기하시는 國會議員의 말이 세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國會에서는 하지 말고 요다음에 잘 熟
議해 가지고 그 후 것이 좋겠다 이런 精神을 내
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勸導입니다. 大體로
이것으로 說明에 代置하는 바입니다.

○副議長(曹奉岩) 國務總理의 撤回하는 理由를 들
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분 發言通知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亦是 通
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郭勳勳議員을 먼저 紹介
합니다.

○郭勳勳議員 지금 國務總理께서 撤回하는 理由
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案이 나온 다
고 新聞紙上에 發表될 때에 그直刻으로 贊意를
가졌은 한 사람이 온시다. 모든 境遇를 超越해

서 이 經濟條項을 改憲함으로써서 外資를 導入
해 가지고 우리 나라 國民生活에 도움이 되고 모
든 産業機關의 復興 發展이 하루바삐 되겠다는
意圖에서 어떤 難關이 있더라도 이것을 通過
시켜서 國民生活을 向上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한 見解 아래에서 極口 贊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國務總理가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案이 안나오고 다른法律로서 外資를 導入
할 수 있고 政府에서 處理할 수 있는 그런 方便이 있
는 데도 不拘하고 구태어 憲法까지 고칠게 무
엇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反對論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確實히 外資를 導入할 必要가 있다
고 하면 나는 國民을 살리기 위해서 萬번이라
도 千번이라도 改憲을 하는 것이 無妨하다고
亦是 主張했습니다. 그런데 萬一에 이案을 내
지 않고 政府에서 그대로 外資를 導入해서 國
民生活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모르거나와 이憲法을 改正함으로써 便利가 된
다는 그런 見地 밑에서라고 하면 萬若 우리
國會에 이案을 내 가지고 否決이 되면 外資를 導入
하는 데라는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 나라 그
國民들에게 感情이 좋지 못할 것을 우리는 提供
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決코 政
府에서 이案을 確信을 가지기 전에 格別한 注
意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이 亦是 말씀했
습니다. 그런데 이제 國務總理의 說明을 들으면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그答辯이 明確치가 못
합니다. 撤回하는 理由가 國民一般에 있어서 反
對하는 理由 或은 贊成하는 理由 모든 것을 參酌
해 가지고 요다음 國會가 成立되는 때에 그案

을 多少 修正해 가지고 지금 政府가 내는案과
복합은 案이 아니고 多少 修正해서 次期國會
에다가 내놓겠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案을 그대로 또한 이다음 國會에 내놓겠다는
말씀인지 이것을 確實히 모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確實히 알아야 이案을 撤回하
는 데 있어서 一般國民의 納得할 道理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受苦스럽지만
國務總理께서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이案 그
대로를 이다음 다시 召集되는 國會에 내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多少 修正을 해서
내놓 것인지 이것만 查辯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副議長曹奉岩 다음은 徐範錫議員 말씀하세요
○徐範錫議員 數次에 걸친 國會要請에 依해서 國
務總理가 改憲案撤回에 依한 理由說明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 說明을 들을 때에 저는 納得하
지 못할 몇가지를 指摘하면서 이번 國務總理의
理由說明이 「하년 말 중에 總우께 대명듯이」 내밀
었기 때문에 우리가 大端히 審議하기 어렵다 하
서 大端히 지어도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했습니까. 하는 改憲案이라는 것은 政
府에서 提出한後 三十日의 公布期間이 있으며
로 이것은 적어도 이 改憲案이 좋은가 나쁜가
結論을 얻기에 相當한 時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理由는 妥當하지 않다고 指摘하
고 싶습니다. 또 하나 法內容에 있어서 天然資源의
處分이 不明해도 여기에 關心을 가진 사람들의
疑訝를 가지기 쉽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까. 하는
이것은 法으로서 그外에 制定할 수 있는 그런理

由을 남긴 條項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이
憲法案이 制定할 때에 政府自體가 거기에서
한 何等의 考慮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말은 理
解하기가 大端히 困難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지금 文書上에 表現된 國務總理의 撤回理由는
이런國會에서 撤回하고자 하고 요다음 國會에 提
出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文書上 表現된
理由로 보아서는 우리가 曲解할지는 모르겠습니
다마는 現國會은 不信任하는 態度라고認定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百步를 讓步해서
現國務總理가 憲法의改正은 民議院과 參議院에
서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現行憲法을 遵守해서
지고 고칠려는 意欲에서 그 慎重性을 생각해서
今後參議院과 民議院이 構成되었을때에 비로소
고치겠습니다 이런理由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는 以後 國會라고 單純히 말씀하십시오에 對하
서는 以後 構成되는 民議院에 이것을 提出하겠
다 내이하고는 여기하기 싫다 이런말씀이라고
저는 指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싶은데 이同意가 萬一 成立되지
않고 現民議院에서 이改憲案이 적어도 產業復
興이란지 復興을爲한 適切한改憲이라고 認定
하고 여기서 通過된다고 하면 國務總理로서 이
것까지도 「비」 하실 그런생각이신가 (笑聲)
이것은 取消합니다 訂正합니다 여기에對해서
滿足치않고 不快하다면 다시말하면 國會에서
定하는 모 定法에對해서는 滿足치않다 그런意
思를가지고 세신가 이것을 確實히 알고싶습니
다 同時에 이改憲案은 政府가 提出하고자고
通過시킬려고하다가 事實通過될希望이 없기때문

에 撤回하였다고 하는 그런風說도 들려있습니
다 그렇기때문에 事實 이것을 撤回했는지 이것도
여기서 確實히 說明해주실것같은데 저의말이 이
撤回案을 同意하는에에 저지않은 參考가 되리
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副議長(曹奉岩) 質問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容辭을 들겠습니다 國務總理를 紹介합니다
○國務總理(白斗鎮) 아까 말씀드릴때에 法律案과
改憲이 되도록 同時에 되는것이 大端히 좋은것
이었다는것을 發見했다 이런얘기를했습니 다 그
래서 郭尙勳議員께서 質問하실때에對해서는 요
다음 國會에 提出할때에는 法律案의 細目이
全部 決定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총을 全
部 決定하고자고 同時에 그것을 내놓고 討議
한後에 그것을 提案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도 同時에 그러면 그改憲案의 內容에 들어가
서는 文字修正이있느냐 없느냐 말씀하는데 그
것은 아직 國務會議에서 全體的인 結論을 내
지는않았습니 다마는 그誤解를 사기쉬운 字句
例를들면 處分이라든지 그런字는 當然히 修
正하고자고 내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徐議員 말씀에 應해서 答辭을 드리겠습니다 좀
個人的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되기때문에 저도
個人的으로 意見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
시다싶이 저는 昨年四月二十四日 國會에서 認
准을 받았습니 다 그때에 百三票의 認准을받
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一年동안 여러분한
데 勞仕를해오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任期가 다 찬것같습니 다 그러면 個人
的으로 얘기한다면 國會에서 通過시킨 法律은

愉快하다 不愉快하다 그렇게는 論議할수없는問
題라고 생각해요 問題는 勿論 여러분도 생각
은 가졌을것이고 저도 늘가지고 있습니다 그
런것은 表示할 아무것도없다고 생각하는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 이改憲案이 撤回하게된 理由
는 아까 말씀드린 理由外에 더 말씀드릴것이
없습니 다 斷然 그것이 納得되지않는다고하면
政府에서 撤回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이
取할方法이 있을것이고 거기에 더 파고들어
가서 이以上 말씀드릴 材料는 과나도 없는것
입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아까 말씀드릴것에 이
것이 表決하고자고 萬一서로 納得안되는 終結
이 되었을적에는 吾國際的으로 困難하다는 이야
기를 誠心誠意를 가지고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했다는 그것도 여기에 添加해서 徐範錫
議員의 質問에對해서 答辭하고자하는것입니다
○副議長(曹奉岩) 여러분 다아시다싶이 國會法
第三十五條에 明示된바와같이 政府에서 本會
議의 議題가된 案을 撤回하려면 本會議의 同
意가있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申
議長이 여기에對해서 말씀했어오 撤回하는것
도 분수가있지 公告는 勿論이고 本會議에上程
시킨後 第一議會도 終了해놓고 撤回하는것은
輕率한일이며 前例없는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 前例가 있고 없고 開에 政府로서는 國會
에서 決定되는것보다도 撤回하는것을 要求하
니까 우리는 亦是 國會法에依해서 撤回를 承
認하거나 안하거나를 決定할수밖에 없는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 特別히 다른 意見이 없으시
면 表決하겠어요 이것은 撤回를 要求할때에는

由을 남긴 條項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이
憲法案이 制定할 때에 政府自體가 거기에서
한 何等의 考慮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말은 理
解하기가 大端히 困難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지금 文書上에 表現된 國務總理의 撤回理由는
이런國會에서 撤回하고자 하고 요다음 國會에 提
出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文書上 表現된
理由로 보아서는 우리가 曲解할지는 모르겠습니
다마는 現國會은 不信任하는 態度라고認定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百步를 讓步해서
現國務總理가 憲法의改正은 民議院과 參議院에
서 할수있도록 되어있는 現行憲法을 遵守해서
지고 고칠려는 意欲에서 그 慎重性을 생각해서
今後參議院과 民議院이 構成되었을때에 비로소
고치겠습니다 이런理由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는 以後 國會라고 單純히 말씀하십시오에 對하
서는 以後 構成되는 民議院에 이것을 提出하겠
다 내이하고는 여기하기 싫다 이런말씀이라고
저는 指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싶은데 이同意가 萬一 成立되지
않고 現民議院에서 이改憲案이 적어도 產業復
興이란지 復興을爲한 適切한改憲이라고 認定
하고 여기서 通過된다고 하면 國務總理로서 이
것까지도 「비」 하실 그런생각이신가 (笑聲)
이것은 取消합니다 訂正합니다 여기에對해서
滿足치않고 不快하다면 다시말하면 國會에서
定하는 모 定法에對해서는 滿足치않다 그런意
思를가지고 세신가 이것을 確實히 알고싶습니
다 同時에 이改憲案은 政府가 提出하고자고
通過시킬려고하다가 事實通過될希望이 없기때문

에 撤回하였다고 하는 그런風說도 들려있습니
다 그렇기때문에 事實 이것을 撤回했는지 이것도
여기서 確實히 說明해주실것같은데 저의말이 이
撤回案을 同意하는에에 저지않은 參考가 되리
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副議長(曹奉岩) 質問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容辭을 들겠습니다 國務總理를 紹介합니다
○國務總理(白斗鎮) 아까 말씀드릴때에 法律案과
改憲이 되도록 同時에 되는것이 大端히 좋은것
이었다는것을 發見했다 이런얘기를했습니 다 그
래서 郭尙勳議員께서 質問하실때에對해서는 요
다음 國會에 提出할때에는 法律案의 細目이
全部 決定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총을 全
部 決定하고자고 同時에 그것을 내놓고 討議
한後에 그것을 提案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도 同時에 그러면 그改憲案의 內容에 들어가
서는 文字修正이있느냐 없느냐 말씀하는데 그
것은 아직 國務會議에서 全體的인 結論을 내
지는않았습니 다마는 그誤解를 사기쉬운 字句
例를들면 處分이라든지 그런字는 當然히 修
正하고자고 내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徐議員 말씀에 應해서 答辭을 드리겠습니다 좀
個人的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되기때문에 저도
個人的으로 意見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
시다싶이 저는 昨年四月二十四日 國會에서 認
准을 받았습니 다 그때에 百三票의 認准을받
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一年동안 여러분한
데 勞仕를해오는데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任期가 다 찬것같습니 다 그러면 個人
的으로 얘기한다면 國會에서 通過시킨 法律은

愉快하다 不愉快하다 그렇게는 論議할수없는問
題라고 생각해요 問題는 勿論 여러분도 생각
은 가졌을것이고 저도 늘가지고 있습니다 그
런것은 表示할 아무것도없다고 생각하는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 이改憲案이 撤回하게된 理由
는 아까 말씀드린 理由外에 더 말씀드릴것이
없습니 다 斷然 그것이 納得되지않는다고하면
政府에서 撤回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이
取할方法이 있을것이고 거기에 더 파고들어
가서 이以上 말씀드릴 材料는 과나도 없는것
입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아까 말씀드릴것에 이
것이 表決하고자고 萬一서로 納得안되는 終結
이 되었을적에는 吾國際的으로 困難하다는 이야
기를 誠心誠意를 가지고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했다는 그것도 여기에 添加해서 徐範錫
議員의 質問에對해서 答辭하고자하는것입니다
○副議長(曹奉岩) 여러분 다아시다싶이 國會法
第三十五條에 明示된바와같이 政府에서 本會
議의 議題가된 案을 撤回하려면 本會議의 同
意가있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申
議長이 여기에對해서 말씀했어오 撤回하는것
도 분수가있지 公告는 勿論이고 本會議에上程
시킨後 第一議會도 終了해놓고 撤回하는것은
輕率한일이며 前例없는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 前例가 있고 없고 開에 政府로서는 國會
에서 決定되는것보다도 撤回하는것을 要求하
니까 우리는 亦是 國會法에依해서 撤回를 承
認하거나 안하거나를 決定할수밖에 없는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 特別히 다른 意見이 없으시
면 表決하겠어요 이것은 撤回를 要求할때에는

承認을 얻어야 된다 그런 明文이 있으면 承認을 하는 것이 可을지다 그래서 可하다고 하면 政府의 要求가承認되는 것임이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十六可에 八十八票 否에 한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憲法改正案은 撤回되었읍니다 다음은 議事日程에依하여 檀紀四二八二年度와 八三年度 歲入歲出總決算에對한것을 上程하였는데 政府에서出席이다 안되고 나왔는데 노 들어가셨는데 總務處에서는 다시 한번 連絡을해서 이決算案이 可決될때까지 參席해주도록 말씀해주시요 그러면 豫算決算委員長 紹介합니다

—(檀紀四二八二、三年度總決算承認의件)—

○豫算決算委員長(李忠煥) 四二八二年度 八三年度 歲入歲出總決算案에關해서 豫算決算委員會의 審査報告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앞에 報告말씀드릴것은 四二八一年度の 歲入歲出決算 審査報告는 大端히 遺憾스럽습니만 本會議에 報告말씀 못드리게되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建國後에 歲入歲出에關한 報告는 이번이 처음인것입니다 建國六年만에 過去에 累積되어있는 이決算報告를 하려는데 하게끔되었다는것도 大端히 어색한 일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八一年度の 總決算을 하지못하게된 經緯를 지금 詳細히 말씀드릴려고합니다 八一年度는 우리나라 政府가樹立된 八月十五日부터 八二年 三月三十일까지의 豫算報告인데 八十三年 二

月四일에 檢査報告書를 作成해서 提出하는 同時에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書에對해서 辯明書를 提出해서 여기에對한 再檢査를 要請했읍니다 그런데 審計院에서는 八十三年 三月 再檢査書를提出함과 同時에 政府는 審計院의 再檢査書와함께 이 決算書를 읽는것입니다 그러나 當時 制憲國會에서는 그 決算額과朝鮮銀行의 決算證明金額이合致되지 않기때문에 이것은決算을 審査하지 못해서 또다시 政府에 返戻를 要請한것입니다 그런데 制憲國會는 그任期를 마치고 第二回 國會議員의 總選舉가있어서 우리들이 當選이된 直後 六·二五 事變이 勃發되어서 이豫算關係書類는 全部다 灰盡이되고 말았기때문에 여기에對한 八一年度 歲入歲出總決算은 그資料가없었기때문에 八一年度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못하게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八二年度와 八三年度 歲入歲出 豫算에對해서 審査할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案을 말씀드리기전에 한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것은 歲入歲出 總決算을 審査한다는가 또는 政府가國會에 提出하여야된다든가 하는 規定은 舊法에는 明確한 規定이없는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當選이되어서 第二回國會때에 制定된 財政法에 이것이 期日이 確實히 規定이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 八二年度와 八三年度 決算案議에있어서는 法律上으로 確實히 期日이 規定되지않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財政法에 依據한 八四年度 審計院에서 調査할期日이 法文上에 確實히 이 것이 規定이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審計

院과 政府로서는 이財政法에 規定된 期日을 嚴守할것을 지이들은 期待하고있는것입니다 具體的인 審計檢査에對한 報告를 말씀드리기전에若干 前提되는말씀을 드릴것이있는데 審計院은 審計院法에依해서 또는 憲法에 制定된바에依하여 大統領의 直屬機關이고 國務院의 獨立機關인것입니다 이 大統領에對한 直屬機關이라고 하는것은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이아니고 國家의 元首인 大統領의 直屬機關이라고밖에 解釋할수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國務院의 獨立機關의 性格을 나타낼수없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審計院은 過去에있어서 人事面에있어서나 豫算面에있어서나 政府에對해서 隸屬된感이있기때문에 審計院이 審計院으로서 本來의 技能을 發揮하는데 커다란 支障과 缺陷이있었다는것을 指摘하지않을수없는것이요 이것으로말미암아 審計院이 審計院法第十條에 規定된 審計對象 政府各機關이나 團體에對해서 獨目的이고 또는 積極的인 審計를할수있는 機會가 賦與되어있지않다는것이 우리가 이번 審計檢査를 한結果에있어서도 根本的으로 再檢討하지않으면안될 重大한問題라고하는 이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審計院檢査報告와함께 決算을 依해서 政府는 審計院檢査報告와함께 決算을 次年度の國會에 提出하여야한다 이렇게 規定되어있는데 憲法의 規定을보면 政府는 審計院檢査報告와함께 豫算國會에 提出하면 그만이지 이國會에 提出함으로써 어떠한 責任이 解除되며 또 어떻게 責任이 아직까지 解除되지않는다고하는 이責任解除에對한 具體的인 憲法規定

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듯 大端히 法律上으로 봐서 이 缺陷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이들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政府側の 말씀을 들을 것은 審計院法 第十七條에 의해서 政府나 政府所屬團體는 審計院이 審計를 할 때에는 辯明書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辯明書를 낸다 고 하는 것은 審計院立法精神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審計院이 審計를 할 當時에 提出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審計院이 審計를 할 때에는 가만히 있고 審計院에서 決定을 허가하고 政府에 檢査報告를 낸 것일 것임. 그 후에 辯明書를 내서 反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辯明書를 내는 것이 審計院法에 있어서 어느 때까지는 辯明書를 낼 수 있으리 어느 때까지는 辯明書도 낼 수 없다는 具體적인 條項이 없지만 審計院立法精神에 비추어 볼 때 審計院의 審計는 期間內에 내야 當然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第一次로 檢査報告가 끝난 후에 새삼스럽게 辯明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辯明書를 본다고 하면 大部分이 審計院의 審計結果에 대해서 是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辯明書에 있어서 下層부에 있어서는 이 審計院이 審計를 할 적에 是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上層部는 下層部에서는 是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上層部는 反對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忠州稅務署에서는 非行이 있었다고 하는데 稅務署職員은 또는 署長은 審計한 結果에 대해서 是認했음에도 불구하고 財務部는 그렇지 않다 고 해서 審計院에 대하여 反駁聲明書를 내고 있는 이러한 事件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후에 이

러한 辯明書를 새로 냈으므로 인해서 審計結果가 오래동안 不合理的 結果에 빠지지 않도록 政府나 審計院의 特別의 努力이 있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附言해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의 事情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具體적으로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政府가 우리國會에 提出한 檢査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大韓民國政府 樹立後 國會로서 決議處理하는 것이 今番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政府가 當決算을 國會에 提出한日子를 말씀드리면 四千二百八十二年度決算은 四千二百八十五年 三月二十九日에 四千二百八十三年度決算은 四千二百八十六年七月二日에 提出하여 왔습니다. 그間國會에서 早速히 處理하지 않았다는 實은 있었읍니다만 政府의 提出怠慢의 責任은 免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政府는 每年度の 決算을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翌年度의 定期國會에 提出하여야 하고 또 그前提로 審計院에 提出日字는 審計院이 檢査報告를 作成할 期間의 餘裕를 두어 每年度の 決算을 늦어도 翌年十月末日까지 審計院에 送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四千二百八十二年度決算은 四千二百八十四年八月二十五日에 四千二百八十三年度決算은 四千二百八十五年七月二十八日에 提出하여 定期日字보다 一年假借 늦게 提出하여 왔읍니다. 勿論 八十二年度決算을 調製함에 있어 當該年度閉鎖直後 六・二五專變이 突發하였고 八十三年度決算期를 滿하여도 事變으로 인하여 關係各機關의 破壞와 決算資料의 被害가 있었지만 決算은 決算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翌年度豫算審議의 重要한 資料가 되므로 決算提出期日의

嚴守를 政府當局者에게 特別히 要望하는 바입니다. 爲先 四千二百八十二年度 歲入歲出 決議의 檢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決算上의 缺陷에 있어서 그 詳細한 것은 審計院檢査報告에 掲載되었으므로 詳細한 것은 言及하기를 避하옵고 本報告에 있어서 右檢査報告와 本委員會의 審査를 綜合報告하여 드리겠습니다. 豫備費支出에 對한 國會承認節次를 缺如한 點입니다. 비록 決算은 動亂으로 인하여 憲法에 規定된 바에 의한 四千二百八十三年度 定期國會에 提出하지 못하였지만 豫備費支出에 對하여는 次期國會인 四千二百八十三年度 定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豫備費支出全額을 一般會計에 있어 九十一件 十五億九千七百六萬九千八百九十九圓 特別會計에 있어서 二十九件 十一億四百四萬三千七百七十五圓에 對하여 國會承認節次를 取하지 않았읍니다. 이는 憲法第九十三條에 違反되는 違法行爲이므로 甚히 遺憾된 處事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豫算에 依한 借入金은 借入金에 있어서 이를 國會의 議決을 얻은 豫算目的에 依하여 執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豫算執行途中生기는 國庫不足으로 인하여 歲出資金에 對하여 無秩序한 節次로 借入金하고 甚至於는 借入金豫算額을 超過하여 屢次借入金한 點이 있습니다. 그 結果로 國庫資金 調節을 放慢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事務를 處理하는 節次面에 있어서도 借入金을 歲入金으로 國庫에 納入시키지 아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朝鮮銀行이 歲入金으로 政納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歲入歲出外 出納케 한 結果 決算額과 朝鮮銀行政納額이 符

송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招來하였음은 遺憾된 일이라 하고 있음이다

제대로 國庫金 貸出納에 있어서 이를 國庫銀行에 一元의으로 取扱시키지 아니하고 또 政府의 保管에 屬하는 現金을 亦是 國庫銀行 以外의 市中銀行에 預置케 함은 會計法規에 違反된 處事임이다 特히 會計廳은 歲入金의 徵收에 있어서 所謂 納代行機關의 名稱으로서 各地域別各金融機關別로 朝鮮銀行 以外의 市中金融機關으로 하여금 手數料까지 支出하여 收納케 하여 歲入金의 國庫 收納을 遲延케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國庫歲入金과 市中銀行에 預置한 保管金은 金融市場에 徘徊하여 營業資金化케 될 變態가 있으므로 不當한 處事라고 認定함이다

네째로 歲入歲出의 年度所屬區分을 截然하게 整理하지 않은 點임이다 四千二百八十二年度所屬經費의 整理期限인 五月三十一일까지에 支出을完了한것에對하여 其中支拂未濟에 爲하는것은 朝鮮銀行에서 一段支拂未濟移越金으로 移越措置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朝鮮銀行이 移越整理한後에도 繼續하여 政府에서 支出을한故로 結局 朝鮮銀行으로 하여금 所定期日에 移越整理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음이다 또 歲入金의 收納에 있어서도 그 整理期間經過後에 朝鮮銀行에 收納된 收納額即 翌年度歲入으로 編入될 收納額을 本件決算에 包含하였으므로 決算額과 朝鮮銀行證明額과의 不 符合을 招來케 하였음이다 이亦不當한 處事라고 生覺하는바입니다

各各歲入歲出의 豫算에 依하여 受拂하여야 할것임에도 不拘하고 政府豫金에 對하여 附利케 함이 없이 借入金에서 元金豫金은 控除한 額에 對하여 利子를 支拂하여 收入과 支出을 混同經理하였음은 亦是 不當한 處事임이다 以上이 權紀四千二百八十二年度歲入歲出決算審査報告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審計院도 本委員會에서 審査한 것까지 附記한 것임이다 政府는 本委員會에서 指摘한 點을 特別히 留意하시여서 하로 速히 是正해주시기를 附託하는 것임이다 다음 權紀四千二百八十三年度歲入歲出決算審査報告를 하겠읍니다 報告에 앞서 한 마디 말씀드릴것은 이 決算年度初期에 있어서 六・三五五事變의 突發로 말미암아 一時는 政府의 各機關이 停止되었다고도 말씀할 수 있고 何如론 年度中을 通하여 安定된 時期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關係書類의 紛燒失을 免할 수 없은 實情이었으므로 決算을 作成하는 政府當局者의 困難도 多大하였다고 生覺하옵고 審計院에서도 計算證明書類의 未到達等으로 完全한 檢査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임도 있습니다 以上과 같은 것으로 一般會計各所管의 歲出과 各特別會計歲出을 通하여 科目未詳의 五億二千二百三十三萬八千六百六十錢에 達하고 있습니다 其他關係書類紛燒失等으로 인한 計算證明의 未到達로 因하여 審計院에서 檢査하지 못한 金額五十億八千八百八十五萬四千四百二十九錢을 合하여 歲出未確定金額이 六十六億一千九十八萬五千二百三十三圓二十九錢에 達합니다 다음 決算審査報告中 重要事項을 說明드리며는

友出은 豫算編成後에 生진 不可避한 豫算의 不足을 補充하고 또는 豫算外에 生진 必要한 經費를 充當하는 것에만 使用하는 것임이다 豫備金으로 支出한 것으로 一般會計에서 豫備費支出額의 二〇「 퍼센트」以上 不用된 것이 十二億七千七百萬圓입니다 그中 九億六千九百萬圓이 全額所用이 되지 않아 全額不用으로 된 것만도 總支出額의 九・八「 퍼센트」에 該當합니다 또 各特別會計에서 豫備費支出額의 二〇「 퍼센트」以上 不用된 것이 二億九千二百萬圓이고 그中 一億一百萬圓이 全額不用으로 되어 全額不用으로 된 것만도 總支出額의 二・二「 퍼센트」에 該當합니다 이러한 不用의 原因이 當時의 戰局에 起因된 것이라 고하겠읍니다만 何如론 豫備金 支出에 있어 慎重한 點이 不足하였고 또 豫備金 支出의 要件具備에 對하여도 疑開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專賣事業特別會計에 있어 本年度의 剩餘金中에서 二十五億圓을 歲出豫算에 依하지 않고 一般會計歲入에 轉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措置는 豫算超過支出이라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고 會計法規와 憲法第九十一條에 違反되는 바입니다

네째로 歲入金의 徵收狀況에 關하여 말씀드리면

歲入金의徵收는各會計를通하여 測定濟額은 五千百四十四億六千萬圓이며對하여 收入未濟額은七百九十九億一千四百萬圓입니다. 이것은 測定濟額에對하여 一五·五「 퍼센트」強이 收入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關聯하여 官業收入인 鐵道運費은 後拂로 하고 收入치 않은것 通信料金은 收入치 않은것 등이 七億五千二百萬圓이 있고 專賣品을 外上으로 賣渡하고 그代金을 收納치 못한것이 三億九千萬圓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收入은 法規上으로 後拂이 認定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後拂로 하고 收入치 못한軍人이나 警察官의 國家機關이오니 이點은 政府當局者의 特別한 注意를 喚起해서 收入을完納하도록 努力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亦是 歲入과關聯되는 바이옵나 다만 契約에依하여 發生한 損害賠償請求權을 行使하지 아니하였으므로因하여 收入에 이르지 못한것 또는 損害에對하여 賠償을 받지 않았고 國家經費로서 損害를 補填한것이 三億一千萬圓 亦是 損害賠償請求를 故意로 放置한 官有物損害가 六件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는 政府의怠慢과 不注意로 當然히 確保된歲入을 確保치 못하여 國庫에 그만큼 損害를 주게한 不當한 處事라 하겠읍니다. 하로바며 是正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歲入金의徵收및 收納에 있어서 그措置가不適當하였으므로 말미암아 收入에 이르지 못한것이 一般會計에서 三百八十八億三千一百萬圓 各特別會計에서 二百八十二億一千萬圓 計 六百七十億四千一百萬圓에 達하고 있습니다. 그中에는 測定

定한 歲入徵收宜으로 하여야 할 時期에 그測定치 아니하고 放任하고 있는 것이 있음은 事務怠慢도 極甚하다 하겠읍니다. 이點에 있어서 는 農林委員會에서도 그不當함을指摘하여 是正을 要求하고 國會에報告할것을要求하였읍니다.

일곱째 歲入金은 國庫에納付하여야 하며 直接使用하지 못하는게 國家會計의原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直接使用한것이 一般會計에서 六千二百萬圓各特別會計에 있어 一千六百萬圓計七千八百萬圓이 있습니다. 이것은 豫算과決算에 包含되지 않는 出納을 하게 되어 會計의秩序를紊亂하는 것임니다.

여덟째 經費의使用에關하여 말하하면 豫算目的에 違背한것이 一般會計에 있어서 八百萬圓 各特別會計에 있어 九億一千八百萬圓 計九億二千六百萬圓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는豫算에서定한 目的에違背한不當한處事라 하겠읍니다.

아홉째 未竣功의工事其他事實은 虛構하고 所屬年度를紊亂한것과 事實을虛構하여 他에使用하는 國庫에損失을招來한것이 一般會計에 三億七千四百萬圓 各特別會計에 六千萬圓이 있고 一般會計에서 高價의代金을支拂하여 國庫에損失을 끼친것이 二千七百萬圓이 있습니다. 이것은 會計公務員의義務違背에起因한것은 勿論입니다만 그大部分이監督者의 監督不充分에 因由한것으로 甚히 遺憾한 일이라고 生覺합니다.

열째 官有物의管理에 있어 그保管出納이 不適當하였으므로 말미암아 國庫에損失을 끼친것이 現品四九點과 其外現金으로 換算한物品代金九千六百萬圓에 該當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官有物도 經費의

支出에依하여 獲得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管理에 있어서 現金에比하여 疏忽한取扱을한 傾向이 있음은 遺憾된 일입니다. 以上이 四千二百八十三年度歲入歲出決算審査報告입니다.

끝으로 參考로 말씀드릴것은 審計院의 檢査結果違法不當하다 하고 決定하고 그에對한處理要求를한것이 四千二百八十二年度에 있어 三百四十七件 四千二百八十三年度에 있어 二百四十七件이 있습니다. 이에對하여 政府에서 處理를完了한것이 四千二百八十二年度分이 二百七十二件 四千二百八十三年度分이 百八十七件뿐이고 나머지는 未處理로 放任하고 있는것은 事務怠慢이라 하겠읍니다. 이에 主로 公務員의 不正行爲로 招來된點이 多多 있습니다. 이러한點에서 公務員의 官紀肅清이 强調되어야 합니다. 從來 審計院이 이러한 公務員의 行爲에對하여 判定을하여 行政責任者에게 그執行을要求하여 왔읍니다만 그間政府에서는 이러한 公務員의 懲戒免除의 措置를하여 왔고 또 最近 即四千二百八十七年一月二十五日자로 公布實施된 大統領令第八百六十七號 公務員等懲戒免除의件은 公務員과 軍의兵으로서 禮紀四千二百八十六年十二月三十一日 以前の所爲로 懲戒處分을 받은 者에對하여는 爾後그懲戒를免除하고 아직 그處分을 받지 아니한者에對하여는 懲戒를 하지 아니한다는骨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措置로서 果然 不正行爲를한公務員이 改過遷善하여 또 다시國家에 陋를 끼치지 않으면 多幸이라 하겠읍니다. 以上으로 四千二百八十二年度 및 四千二百八十三年度歲入歲出決算審査報告를 맺겠습니다.

○副議長(曹奉岩)이 決算報告에對한것은 憲法

第九十五條에依해서 政府가 國會에 提出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審計院의 審計院長의 經過報告를보고 그리고서 各委員會에서 審査를하고 審査한뒤에 오늘날과 같은 報告가있게 마련이되고있는에 우리나라 事情이여러가지 困難한點이있어서 二年...一年度분은 못하게되고八十二年度 八十三年度 두해분이 한꺼번에 하게되어서 審計院의 檢査報告書만을 接受하지고 그때서 各分科委員會에서 審査를 했고 豫算決算委員會에서 綜合審査報告가된것입니다 오늘날은 지방 報告 들은신바와같이 大端히 여러가지 條項을 政府에서 是正하지않으면 안될것이 列擧되고있습니다 列擧되고있는 모든 條項을 認定하고 그때로 施行할것을前提로해서 八十二年度하고 八十三年度の 總決算을 우리가 通過하여 法律的通過가아닙니다마는 事實上 政府의 責任을 免除해주게되는것입니다 다른 意見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表決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가지고계신 油印에依해서 仔細히 아십니다 그 모든點을 비수어서 政府의 是正을 要求하고 이同意를 接收하는것으로됩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五人 可에八十四 否에 一票도없이 可決되었습니다 지금 說明한가운데에 政府로부더 어떠한 條項에對해서는 다시 報告하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어떤方式으로 어느때까지 해야된다는것을 안했읍니다마는 해야된다고하는것은 해야될것입니다 政府에서는 우리豫算 審議가 完全히 끝나기前에 提出해주시면 大

端히 便하게됩니다 그러면 다음 議事日程으로 옮기겠습니다 第五項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 特別市指定에關한 法律案第一讀會를 始作합니다 內務委員會에서 責任지고 審査報告를합니다

(參照)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法制司法 內務委員會)

地方自治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二條第二項 다음에 左의 二項을 新設한다
人口五十萬以上の 市에對하여는 法律의 指定하는바에依하여 政府의 直轄下에 들수있다
前項의 市에對하여는 서울特別市에關한規定에準用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地方自治法第二條第三項에依한 市指定에關한法律案(法制司法 內務委員會修正案)
第一條 釜山市를 地方自治法第二條第三項에依한 市로 指定한다

第二條 釜山市의 區의 區域은 다음과같다
釜山市區廳名稱 및 管轄區域表

- | | | | | | |
|-----|-----|-----|-----|-----|-----|
| 東萊區 | 壽安洞 | 福泉洞 | 明倫洞 | 漆山洞 | 樂民洞 |
| 溫泉洞 | 社稷洞 | 巨堤洞 | 蓮山洞 | 安樂洞 | |
| 盤如洞 | 鳴莊洞 | 書洞 | 錦糸洞 | 回起洞 | |
| 石拾洞 | 盤松洞 | 五倫洞 | 釜谷洞 | 長晉洞 | |
| 楊亭洞 | 佐洞 | 中洞 | 佑洞 | 栽松洞 | 水營 |
| 洞 | 望美洞 | 廣安洞 | 民樂洞 | | |

- 釜山鎮區
- | | | | | |
|-----|------|-----|-----|-----|
| 釜田洞 | 凡田洞 | 草邑洞 | 田浦洞 | 門峴洞 |
| 釜岩洞 | 堂甘洞 | 蓮池洞 | 開琴洞 | |
| 伽佛洞 | 凡一洞 | 南川洞 | 大淵洞 | 龍湖洞 |
| 龍塘洞 | 鐵靈洞 | 朱岩洞 | 佐川洞 | |
| 水晶洞 | 草梁洞 | 瀛州洞 | 大昌洞 | 東光洞 |
| 中央洞 | 大廳洞 | 光復洞 | 南浦洞 | 新昌洞 |
| 昌善洞 | 寶水洞 | 富平洞 | 伏兵洞 | 忠武路 |
| 洞 | 大橋路洞 | | | |

- 西區
- | | | | | |
|------|------|-----|------|-----|
| 東大新洞 | 西大新洞 | 芙蓉洞 | 富民洞 | 土城洞 |
| 峨帽洞 | 草場洞 | 玩月洞 | 南富民洞 | 岩南洞 |
| 槐亭洞 | 下湍洞 | 甘川洞 | 蔚平洞 | 新平洞 |
| 長林洞 | 堂里洞 | 多大洞 | 虹峙洞 | 影島區 |
| 蓬萊洞 | 新仙洞 | 瀛仙洞 | 南港洞 | 大平洞 |
| 青鶴洞 | 東三洞 | | | |

關한法律案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特別市指定에關한法律案)
○內務委員長(趙瓊奎) 本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은 두가지案이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地方自治法中 改正法律案:自治法中에서 人口五十萬以上이될때에는 政府直轄市로할수있다 이것을 新設하자는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釜山市를 政府直轄市로하자 이런 두가지 案이 나왔읍니다 現在 우리가보면 다른나라도보면 이 地方自治團體中에서 人口五十萬이되면 五十萬以上은 特別市로하자 이런法이 通過되고있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陪伴해서 亦是 우리나라에도 五十萬以上이될때에는 政府直轄市로해가지고 그 市의發展을 圖謀하고자하는것이 아마 改正法律案의 趣旨인것 같습니다 이러한意味에서 韓國에

있어서 五十萬以上되어있는 市가 어디냐 現在 로보면 釜山市가 人口五十萬以上을 占有하고있 습니다 그래서 이 法案을 第一項을 五十萬以上 이되는 地方自治團體는 市로 政府直轄市로하자 이 法案을 通過하고난다음에 釜山市를 政府直轄 市로하자는 案이 나온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勿論本委員會로서는 이 案이 다 通過되었습 니다 그러나 우리가 審議한 本委員會에서 通 過된 經過를 말씀드리면 勿論 어느案件이든지 두가지 案이 있을것은 事實이되 改正法律案에對 해서 贊成하분과 反對하분이 있습니다 그要旨을 들어말씀드리면 贊成하는분은 現在 人口五十萬 以上을 包容하고있는 市로말한다고하면 그市가 獨立되므로해서 發展隆盛을 期하기爲하여 獨立 해야되겠다고하는 趣旨에서 勿論 贊成하고있는 것입니다 그反對로 特히 釜山에對한 釜山市를 特別市로하느냐 않느냐하는 問題는相當히 論議 가 많이된것입니다 무엇때문에 그러냐하면 現 在 釜山市의 內容을보면 四二八二年度人口調査에 依하면 約四十七萬으로되어있읍니다 그다음에 人口가 늘어서 原住民이 現在 우리가 數字上 으로보면 大略 六十八萬된다고 推定하고있읍니 다 勿論 臨時首都로있을때에는 خص님으로서 八 十萬되었다고합니다마는 實際數字가 原住民이 約六十萬된다고 이렇게 推定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 四二八二年度 人口調査에依하면 四十七 萬밖에되지않았어요 이러한 人口의比例 또 한 가지는 慶尙南道自體가 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 慶尙南道全體의 一年의 地方稅總收入의 퍼센트 이지」를論한다고하면 道收入의 七十四퍼센트가

釜山에서나오고있는것입니다 地方稅 其他 市郡 에서 二一六「퍼센트」다시말하면 慶尙南道の 全體의 地方稅의 約七十四퍼센트가 釜山에서 나오고있는것이예요 이것은 이 地方稅를가지고 그道를 運營해나가고있는 이 現實에 達着하고 있는것입니다 萬一 이 釜山市가 獨立되므로해가 지고 慶尙南道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렇게보면 慶尙南道는 現在 地方稅收入으로봐가지고 忠清 北道程度 다시말하면 一年의 地方稅收入이 忠 清北道の 地方稅收入이되는것입니다 이러한 形 便에있기때문에 道自體의 困難에 達着하지않을 才생각하고있는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國 家的으로 보아서 國費가얼마나더 追加되어야 한다 이런것을 우리가 推測할수있는데 다시말 하면 釜山市가 直轄市가 됨으로써 獨立함으 로 해서 警察局이 하나 더 늘어난다 警察局이 하나 더 는다고하면 거기에對한 費用이 얼마 나되느냐 하면 約二億五千三百萬圓의 國家費用 을 더 支出하여야 될것입니다 또 그 以外에 釜山市가 特別市로 됨으로써 거기에對한 人件費라든지 其他 事務費라든지 모든 費用이 그만큼 隨伴해서 더 나갈것이 事實일것입니다 이러한 理由로 해가지고서 또 一部議員中에서 는 이러한 釜山市를 잡다가 特別市로 하는것 은 너무 이르다 더군다나 우리가 戰爭을하고 있고 戰爭이 完全히 平和가 되지않고있는 이 現實에 있어서 어느市를 잡다가 昇格을한다든 지 或은 行政區域을 變更한다든지 이러한 一切의 일은 하지않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러 한意見이 많히있읍니다 그러나 現在釜山市로

보면 앞으로 釜山市는 國際的으로 發展시키면 이러한 必要가있고 또 發展을시키려고하면 直轄市로 해야 되겠다고하는 이러한 理由가 스 는것입니다 이러한 理由가 스기때문에 本委員 會로서는 두가지의 意見이 있었지만 表決한 結果 本內務委員會로서는 이 두가지 法案 다시 말하면 人口 五十萬以上이 될때에는 政府直轄 市로할수있다고 하는 이러한 法案과 또 釜山 市를 政府直轄市로 하자고하는 이 結論을 通 過시킨것입니다 다시말하면 內務委員會의 全體 의 意見은 多數決에 依해서 이 두가지 法案 을 옹대고 이렇게 規定지어진것입니다 簡單하 게 이 法案에對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曹奉岩)이 法案에 提案者는 金智泰議 員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提案者의 說明을 들 도록하겠읍니다 金智泰議員을 紹介합니다 ○金智泰議員 釜山을 政府直轄로하자는것은 일 적이 우리가 制憲國會當時부터 論議되어온 問 題입니다 더욱이 우리國會가 釜山에서 開會했 을때에도 이問題가 上程되었던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서울 還都后에 서울에서 이 問題를 表決에부치자 이렇게해서 決議하였던것입니다 그것을 금번에 여러議員同志 여러분들의 多 數의 贊成을 얻어가지고 百三十二名의 署名捺 印으로써 이 法案이 上程된것입니다 이 釜山 이 重要하다는것은 여러議員들이 잘 알고 계시는것입니다마는 特히 六、二五 動亂以來 에 우리 釜山은 臨時首都로서 政治的으로 그 使命을 다 했을뿐아니라 軍事的으로 그의最後 의 橋頭堡로써 그使命을 다 한 結果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서울에 收復한 그 重大한 役
 割도 이 釜山이 擔當하고 있었던 것을 잊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 議員同志 여
 러분에게 配付한 釜山市의 請願書를 보시면
 그 重要性을 넉넉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
 로 여기에서 屢屢한 說明을 드리지 않고 다만
 그 題目만을 列擧해서 參考로供하고저 합니다.
 첫째 釜山은 國土防衛의 基地로서 重大하다고 하
 는 것은 이번 六·二五事變을 契機로해서 여러
 분들의 贊 頌과 支持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貿易港 自由港 이런 點을 살펴본다면
 요즘 이 釜山港에는 萬噸以上の 船舶이 數十隻이
 入港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軍事物資「이
 씨·에이」 援助物資 앞으로 우리의 援助物資 이런
 重大한 物資를 이 釜山을 通해서 全部 우리나라에
 下役을 하고 있고 또 이 港口의 施設을 보면 東洋
 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二百八十萬平方呎이
 라고하는 倉收貯面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埠頭施設은 第一、二、三、四埠頭가
 있어 그야말로 水深이 三十六呎로서 萬噸以上
 의 船舶이 能히 碇泊할 수 있는 우리나라 無二
 의 좋은 港口입니다. 이런 港口를 우리가 빨리
 發展시켜서 國策的으로 이것을 빨리 實行하자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세째로 모든 우리나라의 産業企業體가
 破壞되었고 다만 釜山만의 完全히 남아있기 때
 문에 産業의 中心地로서 우리는 또한 發展시
 켜야 될 것입니다.
 네째로 釜山이 가진 立地的條件은 國際光觀의
 都市로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松島

라든지 海雲台 東萊 그런 名勝地를 使用해서
 外來 손님들 많이 모셔다가 外貨獲得에 努力하
 는 것이 이 釜山의 重大한 하나의 使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點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議員
 께서는 三年동안 釜山에서 自衛하였고 釜山의
 發展相에對해서는 充分한 理解를 가지고 계시
 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現在의 釜山에 가보
 면 이 釜山이라는 것이 「유·엔」軍의 自由港같은
 이런 感覺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美國에
 「와신론」이 있고 「뉴·욕」이 國際港으로 發展
 한 것과같이 우리나라 亦是 首都서울이 있고 國
 際港釜山을 發展시키는 途上에 있다고 나는 이것
 을 斷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光景
 을 바라볼 때에 釜山의 行政區域은 서울特別市
 의 行政區域보다도 오히려 老大합니다. 또한
 人口를 말씀드리면 四二八五年十二月末에 百十
 萬名입니다. 그다음해 四二八六年十月末日에는
 九十一萬五千三百五十二名! 말하자면 百萬市民
 을 가지고 있는 大釜山이 우리나라 國策的으로 볼
 때 國防이라든지 貿易이라든지 産業、經濟、文
 化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國家的見地에서 이것은
 考慮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 釜山市 行政區域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重大
 特殊使命을 完遂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現在 五萬이나 六萬이나 十萬程度에 아니 되는
 都市의 行政區域單位로써 또한 이것이 慶尙南
 道 道治下에 隸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釜山이 가지는 國家的인 重大使命을 完
 遂하는데 이 行政區域을 빨리 中央政府에 直轄
 市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議

員은 이것을 提案한 것입니다. 우리가 濟州島를
 道로昇格시켜서 그 地方의 特殊使命을 考慮해서
 發展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釜山이 亦是 釜山의 特
 殊使命을 可堪해서 이것을 特別市로 하는 理由
 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日本에 있
 어서도 人口 五十萬以上은 特別市로 한다는 작
 定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日本이 그와같이 作定
 한 것도 그 都市特殊性을 充分히 發展시키기 위
 하여 이런 重要한 人口五十萬以上되는 都市를 特
 別市로 하는 이런 點을 볼 때 우리가 오히려 釜
 山市를 中央直轄市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晩時之嘆
 이 있는 것입니다.

본 本議員이 提案한 이 原案에對해서 內務
 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共同修正案을 提
 出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共同修正案과 이사람이
 提出한 原案과는 그 內容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합
 니다. 다만 그 差異點이라는 것은 釜山特別市라는
 그名稱에 있어서 首都서울特別市와 混同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나라에 首都가 두 개가 있는 것 같
 은 이런 感覺이 있어 特別市라는 「特別」二字를 削
 除한 것입니다. 또 하나 理由는 施行期日을 언제
 부터 이것을 實施하느냐 이問題는 八月十五日
 은 施行日字로 作定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政府에서도 特別市를 即時로 施行하기는 困難
 하니 八月十五日까지 時間的 餘裕을달라는 要
 請이 있어서 아마 政府의 要請에 依支해서 八月十
 五일로 修正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修正案의 骨
 子는 釜山特別市로 하지 말고 釜山市라고 그때
 로 하되 施行日字를 八月十五日을 施行期日로 한
 다 이렇게 作定이 되었기 때문에 本議員이 意

다 이 特別市로 하는 것은 釜山의 特殊使命을 完
 遂하는데 이 行政區域을 빨리 中央政府에 直轄
 市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議

다 이 特別市로 하는 것은 釜山의 特殊使命을 完
 遂하는데 이 行政區域을 빨리 中央政府에 直轄
 市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議

圖하는 政府直轄市로해서 그特殊使命을 完遂한
다는 意味에는 何等에 支障이없다 그럼으로써
서 本議員은 本議員이 提案한 原案은 自
에서 撤回하는 同時에 여러同志들에게 諒解를
求하는바입니다 그리고 內務委員會와 法制司法
委員會에 修正案에 依하고자고 여러분이 第二
議會에 들어가서 그條文에 充分한檢討를해가지
고 이法案을 贊成해서 通過시키주시기를 懇切
히바랍니다

○副議長(曹奉岩) 政府로부터 亦是 自己의 意
見을 말씀하셨다는 要求가있읍니다 內務部長官
을紹介합니다

○內務部長官(白漢成) 釜山市昇格問題에 關해서
는 以前에 分科委員會에서 오라고하시는 말씀
이제서서 제가있읍니다 그때에 率然히 이問
題를 제가 들으서 左右間 國會에서 自進해서
이와같이하신다면 그다지 反對意見은없으나 單
只 憂慮되는것은 豫算措置에關한問題가 憂慮되는
가당에 이것이 果然 國務會議에 上程되어가지
고 通過할면지 알릴면지 이것은 擔保를못한다
는것을 미리말씀해주었는것입니다 그後에 仔細
히 이問題를 풀아가서 檢討해본結果 아까 內
務委員長으로부터 말씀이제진바와같이 現在 慶
尙南道에서 그豫算을볼것같은 釜山市로부터
收入되는것이 七十四「 퍼센트」이러한 重大:
過大한部分을갠다가 占領하고있는것입니다 그때
서 萬一 釜山市를 慶尙南道에서 빼내고볼것같
으면 慶尙南道라는것은 大端히 貧弱하게되는것
입니다 또 우리國家豫算上으로 보더라도 警察
局이 하나 또 남니다 警察局이 늘고볼것같은

면 거기에對한 莫大한費用이 들어요 이서울市
를볼것같은면 現在人員 七千五百名입니다 警察局
長以下七千五百名이요 一般公務員을 볼것같은면
八百名인데 只今 實際에있어서 釜山市가 昇格
되면 서울市와같이 實際的要素를 備게되는배
設使 서울特別市와 마찬가지로 人員數는 增加하
지못한다고하드라도 左右間 三分之二나 적어도
半數 이러한 人員은 增加하여야될것입니다 그
러면 半을잡드라도 警察과 一般公務員 卽 主
事以上市長、副市長까지 이一般公務員을 全部合
쳐서 볼것같은면 아무래도 三千四百名 적어도
이것이 적게잡아서 이법게되는배 아무래도 五
千名은 들어야될것입니다 그리고보면 우리國家
豫算이 大端히 逼迫한 境遇에있어서 果然
이豫算措置가 如何히 될면지 알릴면지 大端히
疑問을가지고있읍니다 그리고 그後에 제가 公
式은아닙니다마는 非公式的으로 여러國務委員意
見을 때보았는배 到底이 이것은 不可能하다
이러한 意見이 많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것이 國會에서 萬一 通過된다고할지라도 于先
이런形便에 依支해서 이것이 아마 國務會議에
서 通過되기는 大端히 어렵지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왜反對하시요? 하는이 있음)
○副議長(曹奉岩) 政府에서 意見말씀하셨다고하
기에 나는 參考로좋은말씀을 하실줄알았는데
反對의 말씀을하셔서 提案者에게 未安하게되었
읍니다 다음에는 質疑가있것읍니다 李炳洪議員
말씀해주십시오 李炳洪議員紹介합니다

○李炳洪議員 저는 이法案을 審査한 內務委員

長, 法制司法委員長에게 暫間 한마디簡單히 물
어보겠습니다 地方自治法第四條에 「地方自治團體
를變更 分合하거나 名稱 또는 區域을 法律
로써 變更할때는 關係地方議會의 意見을 물어
야한다」이런 自治法第四條에 이면明文이있읍니
다 여기에對해서 地方團體議會인 釜山市議會나
慶尙南道議會에 그意見を 물었는지요 또 물
었으면 그意見에 綜合된것을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바입니다 또한 이法案에 五十萬이 超過되
면 結局 特別市로만들자 이런것같읍니다 直轄
을만들자는것은 結局 特別市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早速히 南北이
統一되고나면 平壤이라든지 또한 大邱라든지
光州라든지 發展될都市가 많읍니다 이都市에
서 五十萬人口가 자꾸늘어간다고하면 우리나라
는 아마 特別市가 數十個가되어야될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할면지 여기에對해서 意見を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曹奉岩) 金奉才議員紹介합니다
○金奉才議員 大體로 議員先輩 여러분이 잘아
시는 바와같이 요즘은 우리政府가 國會에서
制定한 法律을 「비」로 하는배 아무能熱해졌
읍니다 方今 內務部長官 말씀을 들으니 이것
은 아마 우리國會에서 滿場一致로 作定해서 보
내드라도 「비」로 할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任期를 다마치고 내버릴것이에요 알릴
을 제니 할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일을 잘알면서 內務委員會나 法制司法委員
會가 특히 에기를늘으니 提案의 原案은 撤回
문하고 內務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共同

한것같읍니다

提案으로 修正案을 내가지고 取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國會가 政府에 率先해서 行政機構를 簡素化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主張했고 또 이러한 特別委員會를 만들어가지고 政府方面에 있는 분과 連席會議을 數次 거 쳐나온 것이 事實입니다

오늘날 이러한問題가 行政計劃이 斷行은 되고 있지 않을지언정 우리國會가 앞으로 戰時行政을 하는 데 이러한方向으로 하여야겠다는 것이 우리國會에서도 根本意圖였는 것을 想起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反對로 內務部는 現在가지고 있는 機構를 가지고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國會는 希望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老大人機構를 만들어 老大人人員을 더만는 다! 이런 얘기는 우리國會로써 있을 수 없는 얘기고 特히 內務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가 精神빠진 決議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內務委員長께서 다시 한번 우리國會의意圖가 어떤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曹奉岩) 金奉才議員은 市방 質問時間에 質問으로 發言通知를 했는데 大體討論을 하신 것은 잘못되었어요

(「質問입니다」하는이 있음)

○閣議復議員을 紹介합니다

○閣議復議員 나는 內務委員會의 한사람이 을시 다 이案件을 豫備審査할 때에 參加했는 한사람 이고 釜山市昇格에 對해서 贊同의 意見을 表示하시람이예요 審議當時에 責任長官인 白長官을 招請해가지고 釜山市를 萬一 特別市로昇格을 시킬 때에는 國家機關인 慶尙南道에서 國費關

係가 얼마나 差異가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昇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政府에 어떠한影響이 있었느냐 또 慶尙南道에서는 釜山市 政府直轄로만들므로 말미암아 道費關係는 어떠한 影響이 있었느냐 그때 長官의答辯이 分明히 道費關係는 若干에 損失이 있을 것이다 道에서는 地方費로 歲入해가지고 釜山市로 歲出하는 그差異를 보면 若干 支出이 歲入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큰影響은 없을 것이다 : 그 때에는 警察署나 무슨 附隨되는 機關을 새로 新設하기때문에 政府에 큰 影響이 있다는 말은 조금만지도 없었습니다 萬一國會에서 法으로 決定해준다면 內務部로서는 別異議가 없오 分明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오늘날와서 天壤之差에 그때에 말씀과 百八十度에 轉換된 差異있는 말씀을 하면 이것은 內務部로서는 一定한 政見이 없다고 또한 指摘하지 않을 수 없어요 萬一 오늘날과같은 意見을表示했는들 우리는 바지저고리가 아닌 以上 그때에 可決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可決하도록 하고 只今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只今 金奉才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內務委員會와 法制委員會는 全部 바지저고라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 에對한 意見에 差異가 다른 것을 말씀해주시시

요

○副議長(曹奉岩) 그러면 內務部長官意見이 말렸 다고 하니 한번 다시 들겠습니다

○內務部長官(白漢成) 經過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猝地에 分科委員會에 나간 때에는 左右間國會에서 自進해서 하시면 나로서는

해주시시오 해주지마시시오 할 수가 없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添加해서 通過해주시 면 나로서는 努力을 해보겠으나 國務會議에서 이것이 果然 上程되어서 通過될런지 안될런지擔保를 못한다는 말씀을 미리해드렸습니다 그런 데 그後에 空氣를 個人的으로 보니까 所望이 없어서 事情이 變更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內務部長官 잘하다」하는이 있음)

○副議長(曹奉岩) 委員長質問에對해서 答辯합니다

○內務委員長(趙瓊奎) 아까 李炳洪議員 質問에對한 것을 答辯하겠습니다 地方自治法第四條에 보면 只今 李議員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關係會議의 意見을 들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釜山市 特別市問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約三年前에 釜山에서 所屬分科委員會를 通過해가지고 本會議에 上程되어서 本會議에서 表決을 還都해서하자 그렇게 保留되었는事實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勿論 地方會議가 되어있지 않았읍니다 라는 道の意見을 들 어서 決定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此案이繼續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었기때문에 또한가지는 여러분 이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議案이 釜山 積되어가지고 이會期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할터 인데 地方議會까지 連絡해가지고 地方會議의 意見을 들어가지고 할려면 많은 時日을 要하고 많은 時日을 要한다고 할 것 같으면 到底 이번 會期에 上程되지 못하고 해서 道에서 反對한다는 前提 밑에서 決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한

一五

가지는 앞으로 萬一 五十萬以上이 되면 自然히 直轄市로 昇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直轄市가 얼마든지 늘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다 른나라 例를 본다면 亦是 五十萬以上이 될 때에 特別市 다시 말하면 直轄市로 하다고 하는 例가 相當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萬一 大韓民國에도 五十萬以上이 되는 都市가 많이 생긴다면 大端히 發展해서 五十萬以上이 되는데는 直轄市로 할 수 있다는 規定은 지어두자는 것이 委員會의 意見입니다. 金奉才議員이 內務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에 對해서 많이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것은 金奉才議員이 조금 錯覺을 하신 것 같습니다. 釜山에서 이 案이 三年前에 上程되었을 때에 그때에 百 몇十名의 圖章을 찍어서 上程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百三十名의 議員의 圖章을 찍어가지고 委員會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지저그리는 內務委員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百三十名이 다 바지저그리가 되는 것입니다. 國會議員 半數以上이 바지저그리가 되는 것입니다. 內務, 法制, 兩委員會에서는 百三十名의 意思를 尊重해서 이것을 부득히 本會議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 程度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曹奉岩) 더 質疑하십시오 없으면 大體討論을 始作하겠는 데요 蘇宣奎議員 말씀하시요

○蘇宣奎議員 釜山特別市昇格問題가 眞實로 錯雜하게는 咸을 느끼니다. 例를 들면 釜山市에 서는 特別市로 昇格해달라는 建議書를 내고있고 또 反對로 慶南道議會에서는 反對決議가

오고 또한 여기에 內務委員長의 審査報告 乃至 內務部長官의 이야기를 들는다고 하면 眞實로 錯雜해서 大端히 判斷하기 困難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委員長으로서의 審査報告라는 것이 委員會의 多數見을 먼저 紹介하고 그다음에 小數見도 紹介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報告하는 것이 普通 일 것입니다. 아까 內務委員長의 報告에는 第一階 道稅가 많은 部分을 市에 賦課으로 말미암아 道가 維持 못한다. 그다음에 警察局을 新設하므로 말미암아 國庫에 幾億圓의 負擔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것을 먼저 紹介하셨어요. 이제 分明히 內務, 法制의 共同提案으로 나온바에는 昇格시키지 않으면 안될 뚜렷한 理由가 多數 支配되어서 可決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小數見을 먼저 견어가지고 釜山特別市 昇格을 反對하는것같은 感을 주었다는 것은 大端히 委員長으로서의 審査報告의 缺陷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質問 하고 싶은 것은 反對意見에對해서는 뚜렷히 強調했지만 多數인 釜山市를 特別市로 昇格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뚜렷한 理由가 몇가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나온것은 特別市로 해야만 將來 發展이 될 것이다. 그런 理由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內務, 法制 兩委員會가 바지저그리가 아닌 이상 그 이상 뚜렷한 理由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까 말씀한 바 외에 뚜렷한 理由를 여기서 說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洙議員 內務委員長은 內務, 法制 兩委員

會의 共同決議로서 여기서 審査報告 하는 것이 原則일 것입니다. 방금 蘇議員이 質問한 範圍를 벗어나서 本議員은 달리 質問합니다. 兩該當分科委員會의 審査事項이라고 하면 關係行政에 事前妥協이 完全히 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事前妥協이 안되어가지고 여기서 百三十七名의 總意를 받 들어서 該當分科는 막부득히 審議하게 되었다는 內務委員長의 答覆을 들었습니다. 막부득히 百三十七名議員의 意思를 尊重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該當分科로서 當然히 이와 같은 案件을 上程되었으면 多角度로 調査해서 特別市를 어찌 어떠한 長點으로서 理由에서 부득히 審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長短의 問題가 먼저 論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都에 있는 서울特別市에서는 가령 特別市를 主張한다고 하면 釜山은 우리나라의 關門인가 對에 國際特別市라고 하면 別個問題입니다. 이러한 理由도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關門에 있어서 特別市로 昇格안하면 안된다고 하는 本人의 緒頭に 말씀드린 바와같이 重且大한 理由도 있을 것입니다. 또 反對하는 理由는 道議會 또는 市議員의 決議를 일어야 한다는 것은 방금 內務委員長이 여기서 說明을 했습니다. 그 理由는 있거나와 그 理由보다도 百三十七名인가 하는 議員同志들이 特別市로 昇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重且大한 理由를 먼저 들어서 報告드려야 우리가 眩惑안할 것입니다. 그와 反對로 內務部長官이 말씀한 바와같이 國務會議에

서는 到底의 通論을 豫算措置等關係로 못하
 겠다고 하는 것은 兩分科委員會에서는 事前에
 알았든가 몰랐든가 이것이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事前에 알지 못했다고
 하면 審議하는 때 討論했다고 하는 것을 指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充分한 審議가 없는 것을
 가지고 必不의 依기에 내놓았다는 이것을
 가지고는 本會議에서 取扱하는 때 莫大한 混亂
 과 疑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計에 內
 務委員長과 法制司法委員長은 審議上에 長短의
 必要한 것을 骨子만이라도 여기서 再說明을 해
 주시기前에는 우리는 審議에 着手할 수 없다는
 것을 結論으로 들어서 內務委員長을 비롯해서
 法制司法委員長은 確固한 不動한 審議上의 長
 短을 여기서 發表해달라는 것을 다시 強調하면
 서 要請하는 것입니다 質問과 아울러서 本人의
 意思를 말씀드립니다

○副議長(曹奉岩) 그러면 答辯을 말씀합니다
 ○內務委員長(趙瓊奎) 지금 불으신 말씀에 答
 辯을 하였습니다 아까 審査報告에 있어서 報
 告한 順序가 틀리지 않았는가 또 어떤 意圖를
 內包하고 報告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으신 것
 같습니다 委員長の 立場으로서는 主意見이 있
 는 것을 불고우 紹介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判斷하기에 가장 좋으리라 하고 해서 兩便의 意見
 을 고우고우 말씀드린 것입니다 順序로 보아서
 는 아까 제가 分明히 特別市昇格問題에 있어서
 이 여러러한 理由 때문에 다시 말하면 市の 發展
 上 發展이라고 하계 되면 아까 金智泰議員이 말
 한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理由가 있을 것입

니다 그것을 늘어놓계 되면 相當한 時間이 걸
 린것이기 때문에 綜合해서 市的 發展을 爲해서
 는 特別市로 昇格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있
 겠고 그反對로 反對하는 議員들은 여러러한
 意見이 있겠는데 그 意見을 綜合해가지고 表示
 할 方法이 없었습니다 方法이 없기 때문에 몇
 「리센트」라는 例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것밖
 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市の 發展을 中心으로
 하느냐 道全體의 發展을 中心으로 하느냐 이
 두 意見이 있었는 때 아까 紹介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李漢深議員이 불으신 말씀에 있어서
 事前에 充分한 打合이 없이 審議를 疎忽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平중을 하셨습니다 어떤 案件
 을 審議할 때에는 미리 該當部處와 事前에 打
 合을 해가지고 審議하지 않습니다 우리 國會法에
 事前에 打合해가지고 審議해라 하는 이러한 規
 定을 아직까지는 四年 동안에 한번도 보지 못했
 으 그러하 條文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案件을 審議할 때에는 所屬長官이나 責任者가
 나와가지고 그 意見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이 審
 議에 供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案을 審
 議할 때에는 亦是 所屬該當內務部長官이 나와서
 充分한 여기에 對한 意見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들은 것을 參考로 해가지고 이것을 決定한
 것입니다 이것을 報告 말씀드립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이 있음)

○副議長(曹奉岩) 그러면 大體討論始作하겠어요
 李炳洪議員議事進行에 對한 發言입니다
 ○李炳洪議員 지금 이 案을 質問을 마치고 大
 體討論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때 本議

員은 이것을 大體討論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法的手續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儼然히 地方自
 治法에 地方自治團體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는
 條文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內務委員長의 말씀
 을 들으니 이것을 들지 않겠다고 하니 順序가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案은 다시
 內務委員會로 돌려서 地方自治團體와 自治團體
 體인 釜山市議會나 또는 慶尙南道道議會 또는
 行政府：그 세 군데의 意見을 確實히 들어가지고
 다시 審査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
 고 이것을 內務委員會로 넘기기로 勅議합니다

(「再請이요」 하는이 있음)

(「三請이요」 하는이 있음)

○副議長(曹奉岩) 李炳洪議員의 勅議：여러분이
 잘 아실것 같습니다 마는 이제 다시 한번 委員長과
 道 議論을해보니 地方自治法에 그러한 明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地方議會의 意見을 들
 어라 그러면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었는지 모
 르지만 어쨌든지 들지 않았으니까 法律의 明文
 에 있는 것을 實行안했다 即法的未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內務委員會에 다시 한번 廻附해서
 이러한 手續을 다시 밟은 뒤에 提出하라는 것입니다

(「議長」 하는이 있음)

○白南賦議員을 紹介합니다
 ○白南賦議員 本案件은 우리가 釜山 있을 때에
 還都한 後에 表決하겠다는 이러한 約이 있었
 습니다 우리가 避難途中에는 釜山市民에게 秋
 波를 던질려고 그러한 것을 했는지 모르나
 적어도 百三十名이 署名捺印했다고 했을 때에
 는 그理由를 充分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저금에와가지고 不可不를 論한다는 것은 到底의 當치 못할일이며 그다음에는 地方議會가 構成되지않은 關係上 이것은 繼續關係니까 저금에음스럽게 그것을 받음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또 內務部長官의 말씀이 費用이라든지 여러가지 人件費로 말미암아 到底이 안되겠다 고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萬一 特別市가 되어가지고 우러나라에 不利한 條件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萬若 有利하고 地方的으로 發展이 있다면 費用을 좀내도 關係없을것입니다 또 國家財政이 아무리 容許하지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程度는 할수가있는것이고 國際的 關門의 여러가지를 보아가지고 釜山을 特別市하나 두는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內務委員長의 이야기가 法的으로 不備했으니 새로 附加하면 道議會의 決議를 얻어가지고 한다 이런말을 하지만 그自體가 바지저고리소리들 들어야 마땅해요 왜그러게내냐고 深甚한 檢討를 해가지고 내놓는것이 當然한것이예요 우리가 저금 取할바는 무엇이냐 하면 다만 이것을 可냐 否냐 決定지을것밖에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內務委員會에 附加할 必要가없다는것을 強調하는 바올시다

○副議長(曹奉岩) 嚴詳委員을 紹介합니다. ○嚴詳委員 여기나온 法律案은 두개입니다 하나는 地方自治法中 改正法律案이고 하나는 地方自治法第二條第三項에 依한 市指定에 關한 法律입니다 地方自治法中 改正法律案 即第二條第二項다음에「左의 二項을 新設한다」이法律案

은 關係議會의 意見을 들을必要도 없는 法律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分離해서 直接上 程해서 可決지을수있으니 이것은 內務委員會에 들릴 必要가없을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地方自治法第二條第三項에 依한 市指定에 關한 法律案 이것이 行政區域의 變更에 關한것이냐 關係議會의 意見을 들어야된다 이점이 하나결정될것—입니다 그런데 勿論 關係委員會로서 疎忽히 한점이 있다는것을 指摘해야될것입니다 그러하기는하나 法律精神上으로 보면 關係議會의 意見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같은 우리가 審議할적에 알면 그만일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分의 各手中에 들어가서 있는것같이 油印된 文書가 慶尙南道議會로서 反對라는것입니다 反對라는것을 우리가 다알고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새로 慶尙南道議會에서 意見을 들은라고 해도 反對意見밖에 안아옵니다 或은 偽造文書를 가져고 왔다고 할것같으면 問題는 別問題일것입니다마는 적어도 偽造文書는 가지 않고 오지않았을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判斷資料는 다 나와있는것이예요 慶尙南道議會로서는 反對하고 釜山市議會로서 贊成이다 이렇게나와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우리判斷資料가 다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대여 法律條文 그대로만 하기爲해서 이것을 다시撤回한다면 이것은 結局 遲延作戰밖에 안될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會期를—얼마도 남겨놓지않은 이마당에 있어서 判斷資料를 充分히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이것을 區區한 節次를 맞추기爲해서 또 돌려보내는것보다는 이자리에서 可決可否

면否 決定지어버리는것이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다시 돌려보낼必要는 없지않는가 이러한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副議長(曹奉岩) 徐二煥委員을 紹介합니다 ○徐二煥委員 嚴詳委員의 可否問 表決자는 것도 좋은뜻한 意見같습니다 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地方自治法改正法律案 即直轄市로 하느니 어떠한 市로 하느니하는것은 行政區域 地方自治團體를 새로 設定하는 問題인 까닭에 이것은 地方自治制에 큰影響이 없는것입니다 地方自治法이라하는 이法律을 現下改正의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를 萬一 反問한다고 할것같으면 우리議員大多數는 改正의 必要가 있노라 하는 答을明確하게할것입니다 왜그러나하면 過去에 改憲案이 通過된後 改正된 憲法과 이地方自治法의 調節關係가 先後가 撞着이 되었읍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官選制 그대로 놔두고서 一國의 元首인 大統領만을 直選制로 한다는것은 法的 體制上 크게 그릇된것입니다 그러므로 改憲段階에 이말을 우리 數次反復하였으며 憲法의 矛盾된 條文도 우리의 責任上 不遠한 時日內에 이것을 再修正하자—는것도 約束하였던것이였읍니다 이러한 公約을 해본것도 우리내가 着手改正을 하지 못하고 이地方自治制에 큰缺陷이 있는것도 오늘날 時間의 餘裕가 없어서 改正修正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枝葉末端인 市의 昇格問題云云을 우리내가 論議할 必要가 全然 없는것입니다 하고 우리내의 任期는 甚히 짧르게 되어있읍니다 우리내 任期末에 있어가지

고 枝葉問題를 取扱한다고하는 것은 우리政治 責任上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憲法의 改正이라든지 地方自治制度의 新設이라든지하는 것은 新國會에 우리가 머루어 두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任期內에 緊急을 要하는 案件만을 處理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보고는 까닭에 本議員은 이案件만은 保留해 가지고 新國會로 넘겨져 하는 것입니다. 아니 否니 決定지우는 것은 妥當치않을 것이 아닌가하는 意見을 말씀하시고서 이로써 下壇하겠습니까

○副議長(曹奉岩) 委員長으로서 意見이 있습니다

○內務委員長(趙瓊奎) 地方自治法第四條에 依하면 關係議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고 分明히 있습니다. 關係議會의 意見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關係議會의 意見을 充分히 參酌했다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意見을 어떠한 방법으로 으로 했느냐하는 問題 그規定까지는 法律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앞에 가있는 慶尙南道議會의 建議案을 보면 잘아실 것입니다. 亦是 그러한 反對한다는 意見을 參酌해 가지고 審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關係議會의 意見을 어떠한 방법으로 參酌하느냐 意見을 들었느냐하는 그것을 묻는다면 그답은 요다음에 하기로 하고 意見을 參酌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時間上關係 會期關係, 여러가지 參酌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白南軾議員이 錯覺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內務委員長이 勳議를 해 가지고 內務委員會에 돌려달라는 이야기기를 한 것같이 白南軾議員이 말씀하시

는 때 勳議하신 委員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分明히 내가 아니고 李炳洪議員이 勳議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白南軾議員이 錯覺하신 것은 內務委員長이 內務委員會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內務委員會의 여러이러한 法的手續이 不充分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內務委員會에 돌려달라는 이것 李炳洪議員의 勳議입니다. 그것은 白南軾議員의 精神的錯覺인 줄 압니다

○副議長(曹奉岩) 鄭基元議員 하분만 더 말씀합니다

○鄭基元議員 이러한 問題를 議事日程에 올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散亂하게 해서 대단히 未安합니다. 하지만 좀 誤解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內務委員長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釜山市를 直轄市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三千名이나 五千名の 職員을 增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莫大한 豫算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絕對反對입니다. 直轄市로 하는 가운데서 單只要求되는 것은 한가지 한 局을 더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釜山市로서의 警察局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市の 發展을 못한다고 해서 警察局 하나만 늘리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警察을 百名을 두겠습니까 二百名을 두겠습니까 한 데도不拘하고 三千名이라든지 五千名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하신 것에 對해서 誤解를 사게 해서 대단히 우리 一般國會議員은 疑訝한點을 가집니다. 率直히 여러분께 말씀드릴려는 것은 釜山市에서 道에 바치는 稅納이 얼마인고 하니 八千四百九十

九萬五千圓입니다. 또 道에서 市로 還元이 되어 가지고 받는 것이 얼마인고 하니 八千三百九十二萬四千圓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釜山市에서 바치고 우리가 받아오지 못하는 돈이 얼마인고 하니 七萬千圓이라는 것밖에는 거기에 差異가 없습니다. 그런데 釜山市昇格으로 말미암아서 道에서 莫大한 豫算面에서 損失을 보는 것같이 말씀을 하

고 이러한 것에 對해서는 우리國會議員에게 疑訝한點을 주어가지고 市昇格에 對해서 莫大한 支障을 주는 對해서는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內務長官께서 나오셔서 말씀한데 그다지 큰 支障이 없다는 말씀을 했고 또 內務部地方局長이 나와서 그렇게 큰 豫算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不拘하고 오늘 와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또同時에 施行에 對해서 政府豫算에 關係된다고 하니 八月十五日날쯤 가서 그만한 警察局設立하는 것은 豫算을 주겠다는 約束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五千名增員을 要請하지 않습니다. 三千名增員도 願하지 않습니다. 單只 警察局 하나 두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現在 百萬圓의 差異가 있을까 말까 하는 豫算을 가지고는 警察局을 못 두겠다는 데 大端히 疑問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制憲國會 때에도 여러분들이 釜山市의 發展狀況을 아시

火災復興事業에 있어서 美軍을과같이 接觸해가자고 運動하고 일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으로서는 나온 이야기입니다 大韓民國政府가 六·二五動亂以後로서 第一 釜山港이 없었더라면 이戰爭은 이길수 없었다는 말까지 합니다 왜그러나하면 여러 億萬噸의 軍需品이 어찌로 들어왔느냐 하면 釜山港으로 들어왔다 第二埠頭 第三埠頭로 몇 萬噸 몇千噸짜리배가 軍需品을 산메미같이 싣고 와서 바로 그자리에 上陸시키는것은 요긴한일 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將來에있어서나 過去에 있어서도 이와같이 重要하니앞으로 共產主義를 打破하는 戰爭마당에있어서도 釜山港을 都市를 發展시키지않으면안된다고 그들도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바와같이 外國사람도 그랬고 우리 大統領께서도 그랬고 釜山市の 發展을爲해서 이와같이 重要한 釜山市の 昇格에對해서 이번 三次까지 나왔는에도 不拘하고 여러분들이 大體討論도안하고 質問 몇마디하다가 道에서 反對하니 그만두자고 遲延作戰을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三年동안 四年 동안 여러분들의 意見을 尊重해왔고 여러분들의 좋은 意見을 絶對로 도와드렸고 活動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 釜山市 發展을爲해서 大韓民國政府의 發展을爲해서 特別市를 昇格해달라는 要請인메도 不拘하고 여러분들이 不應해가지고 이별제말씀하신다는것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笑聲) 何如間 더 以上 말씀 안합니다

여러분들의 高見에 말걸다름입니다 여러분들이 四年동안 釜山市에와서 지냈고 또 四年동안 우리 釜山市出身國會議員들과 國事를 討論한情

으로보아서도 이번에 特別市로 昇格해달라는 要請은 大體討論도 안하고 이별제하시는데 感情은 大端히 좋지 못합니다 何如間 여러분의 意見에 말기고 좋은 善處를 바라는바입니다

○副議長(曹奉岩) 勿論 反對하신분도 계십니다 表決하겠읍니다 座席整頓해주세요 李炳洪議員의 勸議를 表決합니다 內務委員會에 다시 別附해서 手續을 整備해가지고 내노아라 그러는것입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十六人 可에 十九票 否에 八票도 없읍니다만 過半數 못되어 未決입니다 다시한번 表決하겠읍니다

在席員數 百十六人 可에 十票 否에 八票도 없읍니다만 過半數 못되어서 未決입니다 두번 表決해서 未決인가답에 李炳洪議員의 勸議는 廢棄됩니다 大體討論繼續할까요?

(「議事進行이예요」하는이 있음) 宋邦鑄議員 議事進行에對해서 말씀하세요 ○宋邦鑄議員 지금까지 이미 이야기가 많이됐고 또 內務委員會로 別附하자고하는에 討論이 어지간히 됐읍니다 여기 이問題는 우리가 釜山에있을때에 釜山市를 特別市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問題가 相當히論議가되었는것입니다 또 오늘 이問題를 우리가 審議하는에있어서 會期에있어가지고도 時間的으로 餘裕를 가지요있지 않음에 이런問題에對해서 時間을 쓰는것보다는 이점을 即時로 二讀會로 넘겨서 表決하는것이

○副議長(曹奉岩) 再請합니다 (「三請이요」하는이 있음) 鄭基元議員 再請합니다

(「三請이요」하는이 있음) 鄭基元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曹奉岩) 宋邦鑄議員의 勸議는 諸節次를 省略하고 表決하자는것입니다 다른 意見없으시면 表決합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十八人 可에 六十一票 否에 八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시방다 說明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두가지로되고있읍니다 하나는 五十萬以上の 人口가되는 境遇에있어서는 特別市로한다는 條項 하나하고 釜山市를 特別市로하자는것이 두가지입니다 따로 물을까요?

議事進行上 尙 簡便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二讀會에 넘기기를 勸議합니다 ○鄭基元議員이 再請합니다 (「三請이요」하는이 있음)

여러분께서 速히하는것을 要求하신다면 節次를 省略하고 即時 表決하는것이 더 좋을것같아서 그렇게 勸議합니다

(「三請이요」하는이 있음) 鄭基元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曹奉岩) 宋邦鑄議員의 勸議는 諸節次를 省略하고 表決하자는것입니다 다른 意見없으시면 表決합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十八人 可에 四十九票 否에는 八票도 없읍니다마는 過半數 못되어 未決입니다

그러면 表決하겠읍니다 같이一括해서 하자는 意見도있고 따로 따로 表決하자는 意見이있읍니다 內容이 같지않읍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第一條의修正 人口五十萬名以上인境遇에는 直轄市로 한다는 條項입니다

다시 한번 表決하겠읍니다 이問題가 解決되는배
따라서 둘째問題는 自然히 解決되는것입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十八人 可에 五十五票 否에 한票
도없읍니다마는 亦是 過半數 未되어 未決입니다
다 두번表決해서 未決인것에 이 第一條修正
案은 廢棄됩니다 그러면 釜山市의 特別市問題
는 이것이 廢棄되는배 따라서 이번에는 問題
가될수없읍니다

— (忠武市昇格에關한 法律案上程要求의
件) —

○副議長 (曹奉岩) 여기에 緊急한問題가 있읍니
다 法制司法委員會에 關係되는 일이에요 徐相
灝議員外四十六人으로부터 提案된것으로서 統營
邑을 忠武市로 昇格시키자는것을 三月十七일까
지 上程해라하는 그런要求인데 이것은 지난十
一月八일에 內務委員會에서 通過되어서 法制司
法委員會에 廻附되었는데 法制司法委員會로부터
오늘까지 提出되지않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十七일까지 提出해달라는 動議에요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없오」하는이 있음)

그렇게 提出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 來일은
委員會를하고 모래 午前十時에 開會합니다
(下午一時二十分散會)